

#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경대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4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9.

발의자 : 경대수 · 엄용수 · 이종명  
이명수 · 김성찬 · 김종석  
이종배 · 정태옥 · 문진국  
이철우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  
그런데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의 개정으로 「농업정책보험금융원」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.  
따라서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설립된 「농업정책보험금융원」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, 「농업정책보험금융원」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·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항).

##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”을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63조의2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용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) ① (생 략)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</u> 에 위탁할 수 있다.	제12조(용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「 <u>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/u> 」 제63조의2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<u>농업정책보험금융원</u> -----.
1. ~ 3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